[서식 예]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서


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신청

채 권 자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★★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주식회사◈◈◈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이사 ◈◈◈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청구채권의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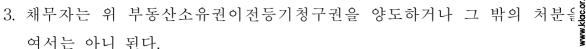
금 OOO원(집행력 있는 OO지방법원 2000가합OOO 판결에 기초한 전부 금채권 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한 2000. O. O.부터 2000. O. O.까지 연 OO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OOO원의 합계임)

압류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표시

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○○. ○. ○.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

신 청 취 지

- 1.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다.
- 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합○○○ 집행력 있는 전부금판 결정본에 기하여 청구채권표시의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, 채무자는 경제 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채권자의 여러 차례의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20〇〇. 〇. 〇. 제3채무 자로부터 매수하여 계약금,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았으나,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아직 마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처분을 막고 훗날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	집행력 있는 판결정본	1통
1.	송달증명원	1통
1.	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	1통
1.	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	1통
1.	법인등기사항증명서	1통
1.	송달료납부서	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채권자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위 귀중

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○○시 ○구 ○○동 ○○○ ○○○아파트 제205동 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: 205-5-508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: 5층 508호 42.55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	ㅇㅇ시 ㅇ구	ㅇㅇ동	000	대 15144.8m²
2.	같은 동		000-2	대 1876.2m²
3.	같은 동		$\bigcirc \bigcirc \bigcirc -3$	대 5725.4m²
4.	같은 동		000-4	대 6011 m²
5.	같은 동		000-5	대 2056 m²
6.	같은 동		000-6	대 3746.3m²
7.	같은 동		000-7	대 1013m²
8.	같은 동		000-8	대 2954.5m²

대지권의 종류:1 내지 8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39.66/38527.2. 끝.

			ac.orl			
제출법원	※ 아래 참조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23조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(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)					
불복절차 및	·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)					
기간	・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)					
비용	· 인지액 : 2,000원(🖙 단	민사접수서류에	붙일 인지액)			
비 용 	・송달료 : 당사자수×3	,700원(우편료)×	2회분			
	·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	· 압류가 있으면 그 변	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			
			되는 것이나,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			
			한 것이 아니고,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			
			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			
			며,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			
			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			
			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 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, 제3			
			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			
			·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			
			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			
			26.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			
			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			
	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	l 대한 강제경매를 실	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아야 할			
	것이므로, 제3채무자의 고의	또는 과실로 소유권	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			
	여 채무자, 제3자 명의의 소	유권이전등기가 순차	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			
	임이 성립하는 경우, 그로 역	<u></u> 1한 압류채권자의 손혀	대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			
 기 타	자가 배당 받을 금액이라고	보아야 함. 소유권이	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부동산에 관하			
/ 4			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여 줌			
	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	입힌 경우, 채권자의 🤄	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부동산에 관			
			행할 경매절차의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			
	보고 그대로 원용한 사례(대					
		- ,	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			
			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			
			사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"는 소유권			
			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			
		,	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, 도 마찬가지임(대법원 2001. 10. 9. 선고			
	2000다51216 판결).	게 대한 납파의 경우의	[고 타전기자 급(대접된 2001, 10, 5, 전고			
		남류나 앙류가 해하여지	니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			
			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,			
		<i>*</i>	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			
			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음(대			
	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다					
	·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투	나 가압류의 효력은 .	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			
	에 생김(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다카19108 판결).					



- ※ 제출법원(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)
 - 1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(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)이 있는 곳의 지방법 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)
 - 2.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), 다만,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)
 - 3.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)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